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운영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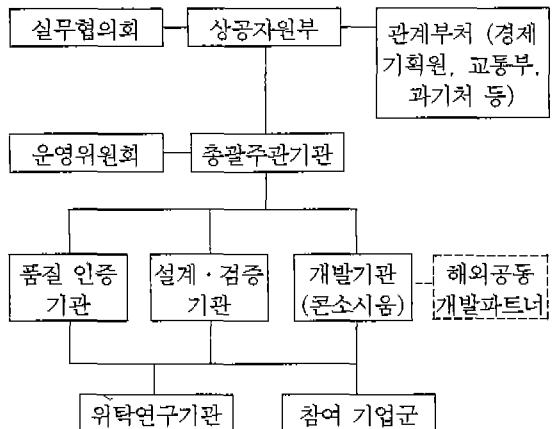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라 함은 본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의 심의·조정기구를 말한다.
- ② “실무협의회”라 함은 본 개발사업의 수행상 당면케 될 제반 주요과제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및 추진할 기구를 말한다.
- ③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본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④ “설계검증기관”이라 함은 개발기관의 개발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품질인증기관”은 개발항공기의 생산증명 업무와 형식증명 획득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인증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⑥ “개발기관”이라 함은 시제기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⑦ “주관회사”라 함은 개발기관을 대표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⑧ “참여기업”이라 함은 개발기관에 참여하여 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정부출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는 기업들을 말한다.
- ⑨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본 개발사업에 위탁참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을 말한다.

- ⑩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라 함은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 ⑪ “해당기관”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설계검증기관, 품질인증기관, 개발기관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장 관련기관 및 조직

제4조 (운영위원회)

- ① 본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심의·조정
 3. 개발사업 내용의 중요 변경사항 심의
 4. 연구결과 및 사업화 평가
 5. 기타 본 개발사업 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 ③ 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상공차원부 국장급
 2. 관계부처 국장급
 3. 총괄주관기관 대표
 4. 한국 항공우주산업협회 상근임원
 5. 기타 산·학·연 전문가
- ④ 위원은 상공차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항공우주공업과장 및 항공우주연구소 항공사업단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 ⑥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실무협의회)

- ① 본 개발사업의 수행상 당면케 될 제반 문제점 및 과제의 효과적 해결 및 추진을 위해 협약당사자간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해결을 추진한다.
1.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견의
 2. 당사자간 의견교환 및 기타 당면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3. 당사자간 업무협조체계 유지방안 마련 등
-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상공차원부 장관이 위촉하여 다음의 기관인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1. 상공차원부 항공우주공업과장
 2. 총괄주관기관
 3.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4. 개발기관 등
- ④ 위원장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제6조 (총괄주관기관)

- ① 상공차원부 장관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를 총괄주관기관으로 정한다.
- ②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전체 사업계획 수립 및 개별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2. 상공차원부장관 및 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3. 분과위원회 관리 또는 운영
 4.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 책임
 5. 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사업책임자 변경
 6. 사업 조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7. 년차 및 최종보고서 작성
 8. 개발사업비의 사용 관리 및 청산
 9. 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 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 결과 보고
 10. 개발기관의 기술료 징수
 11. 기술료의 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1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연구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명시된 각종 사항의 사전 조정 및 검토
 13. 기타 총괄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등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총괄책임자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동 개발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④ 총괄주관기관은 본 개발사업에 대해 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총괄주관기관은 개발사업전체의 총괄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총괄주관기관은 범 국가적 기술축적과 공공재적 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개발기관 및 해외협력업체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설계검증기관)

- ① 상공차원부장관은 시제기의 설계를 검증하고 시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를 설계검증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설계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운영요령의 별지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시제개발사업에 관련한 제반 설계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감리와 검증, 기술지원
 3. 시제개발사업에 관련한 제반 기술정보의 수집 및 유지관리
 4. 풍동 및 대형구조시험 설비 등을 이용한 시험 평가
 5. 시제개발 진행시 발생하는 형상, 제원, 성능변경

자료

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6. 설계검증업무의 낸차 및 최종보고서 작성
7. 상기업부 수행사업비 사용 및 관리
- ③ 시험평가는 개발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총책임자와 협의후 개발기관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설계검증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검증책임자”라 한다)는 설계검증기관에 소속된 자로 동 설계검증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⑤ 검증책임자는 필요시 총괄책임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8조 (품질인증기관)

-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정한다.
-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운영요령의 별지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생산증명 업무수행
 3.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체계의 완비
 4. 형식증명, 감항증명업무 지원
 5. 해외 품질인증기관과의 형식증명 취득과 관련한 업무수행 및 지원
 6. 품질인증업무의 낸차 및 최종보고서 작성
 7. 상기업부 수행사업비 사용 및 관리
- ③ 품질인증 획득업무는 총책임자와 협의후 개발기관의 동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④ 품질인증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인증책임자”라 한다)는 품질인증기관에 소속된 자로 동 품질인증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9조 (개발기관)

-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관련업체로 구성되는 조합을 개발기관으로 하고 조합내 주관회사는 삼성항공(주)으로 정한다.
- ② 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총괄주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2. 해외협력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
 3. 개발항공기의 최종성능에 대한 책임
 4. 참여기업군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및 조정
 5. 시제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제개발내용과 수

행방법 결정

6. 시제개발업무의 낸차 및 최종보고서 작성
7. 개발항공기 인증(형식, 생산, 감항 등) 획득
8. 시제개발업무 진행 감독, 조정
9. 개발기관의 개발사업비 사용 및 관리
10. 참여기업 기술개발사업 결과 평가, 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를 총괄주관기관에 보고
11. 참여기업의 기술료 정수 및 기술료 납부의 의무
12. 기타 해당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지원 등 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③ 본 개발사업 중 시제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책임자”라 한다)는 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동 시제개발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제10조 (참여기업)

- ① 참여기업은 개발기관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한다.
- ② 참여기업은 해당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에의 공동참여
 2.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
 4. 해당개발사업 계획 수립
 5. 해당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
 6. 해당개발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정산 결과보고
 7. 개발기관에 기술개발 진행 및 결과보고
 8. 기타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③ 본 개발사업 중 참여기업의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개발책임자(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는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로 참여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및 협약

제11조 (사업계획서의 신청)

해당기관은 매년도 사업신청(계획)서를 운영요령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일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총괄주관기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사업계획서를 운영요령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제21조1항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 조정 및 심의)

- ① 총괄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기관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총괄주관기관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의 재심의를 거쳐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의 확정)

운영위에서 심의 · 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은 확정결과를 설계검증기관, 품질인증기관, 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개발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기준)

- ① 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주관기관 및 해당기관은 당해 기술과제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총괄주관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 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단, 비행시험에 참여하는 탑승인원 등 위험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와 해외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총괄주관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실소요 경비로 인정한다.
2. 직접연구비 : 운영요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3. 간접연구비 : 당해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간접연구비>

구 분	내 용
여 비	연구원의 국내 및 국외 출장여비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직급별 평균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기술정보 활동비	기술정보를 입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술지도비, 문현정보 수집비, 교육훈련비,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회의비, 국제특허출원비, 기술도입비 등을 명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해외 또는 국내에 설치하는 공동설계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로 실제 소요액으로 한다.
제 잡 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유인물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는 경비로서 다음내용으로 한다.

4. 개발보전비 : 운영요령 제20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개발기관은 5%이내로 한다.
5. 위탁개발사업비 : 운영요령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 ② 운영요령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사업관리비는 총괄주관기관이 본 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평가 ·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경기 등으로서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2% 이내로 지급하며, 동 내용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개발사업비 산정기준은 불임의 기준을 적용하되 동 불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주관기관이 정하되 상공자원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기업 부담금의 부담형태)

- ① 참여기업 부담금의 형태는 운영요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다.
- ② 당해년도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는 현금은 당해년도 총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 ③ 개발기관은 본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의 출자비율을 총괄주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상향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체결)

- ①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상공자원부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개발기관의 민간 부담현금 100%를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3개월이내 약속어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50%는 9개월이내 약속어음으로 가능하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시 개발기관의 민간부담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주관회사 명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개발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은 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계약체결하되 개발기관의 운영약정에 따른다. 다만, 개발기관의 운영약정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5조 제1항에 의거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 협약서를 참고로 하여 협약서식을 확정한다.
- ④ 총괄주관기관과 설계검증기관, 품질인증기관이 동일기관일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총괄주관기관 간의 협약서로 갈음한다.

자료

제17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 ① 정부출연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총괄주관기관장에게 일괄지급하고, 총괄주관기관장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개발기관에 지급한다.
- ② 개발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운영약정을 준용하여 참여기업의 개발수행 범위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재지급 한다.

제18조 (협약변경)

상공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 개발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사안에 따른 변경 승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변경주요사항	승인기관	비 고
○ 총개발사업기간, 개발 목표 총괄책임자, 해외 협약사항 변경 등 주요 사항	상공자원부	운영위에서 사전 협의후 상정
○ 총책임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	총괄주관기관	운영위의 심의를 거친
○ 위탁연구기관 및 책임자 변경	총괄주관기관	상공자원부에 보고
○ 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에 당해년도 개발기간 연장 - 6개월 이내의 기간 연장	총괄주관기관	운영위의 심의를 거친
○ 협약기간외 개발사업비 지출	총괄주관기관	운영요령 제29조 제5항
○ 개발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총괄주관기관	본 지침의 제21조 참조
○ 연구기자재 변경 구입	총괄주관기관	본 지침의 제21조 참조

제19조 (협약의 해약)

협약의 해약은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다.

제5장 개발사업수행 관리 및 결과보고

제20조 (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① 정부출연금 등 본 개발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주관기관, 해당기관 및 참여기업은 개발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나 총괄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개발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된 개발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본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총괄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약 체결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발사업비를 비목별 10% 이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년차보고서 제출 · 평가)

① 해당기관은 운영요령의 별지서식에 의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년차보고서를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 1개월전까지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주관기관은 접수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년차보고서를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속”, “중단”, “보완”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계속”으로 평가된 기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차년도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조정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보완결과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상공자원부장관은 상기 2.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제16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며, 상기 2, 3, 4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의 중단등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설계검증기관 및 인증기관은 운영요령의 별지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 월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관은 운영요령 별지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개발사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확인서를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주관기관은 접수한 최종보고서를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성공”, “실패”의 2등급으로 평가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자료에는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총괄주관기관은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개발기관에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개발결과를 활용토록하는 실시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공자원부장관은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로 평가된 경우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총괄주관기관은 3항의 평가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견 청취, 공개평가회 등을 가질 수 있다.

제23조 (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해당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기술개발사업별로 운영요령의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당해년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총괄주관기관 및 해당기관은 개발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괄주관기관은 당해년도 개발사업비중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하며 개발기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③ 개발기관 및 참여기업은 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 개발사업 종료후에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상공부장관이나 총괄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장 실태조사 등)

총괄주관기관은 개발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해, 개발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평가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제25조 (활용도 평가)

① 총괄주관기관은 개발기관이 개발성과를 실시 통보시 지정한 기일까지 미활용할 경우 자체검토 및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활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로, 미활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유예”로 평가한다. 이때 기술료 징수유예기간은 운영위의 검토의견을 받아 상공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② 1항에 의한 기술료 징수유예기간을 받은 개발기간은 유예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개발성과의 활용 또는 미활용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의 처리방법은 운영위의 검토의견을 받아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개발기관이 개발성과의 활용으로 항공기 양산을 결정할 경우 사업특성상 “기술료 납부유예” 기간을 준다.

④ 총괄주관기관은 기술료 징수유예 또는 납부유예기간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제26조 (기술료의 징수)

① 총괄주관기관, 설계점증기관, 품질인증기관이 집행한 금액은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발기관은 1항을 제외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총괄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는 기술료 납부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징수 되되 구체적인 징수방법 및 제25조 3항에 의한 기술료 납부유예기간은 운영위의 검토의견을 받아 상공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기술료의 납부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는 운영요령 제36조 제6항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다.

⑤ 기술료 징수 또는 납부실적이 우수한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해서는 운영요령 36

자료

조 7항에 따른다.

제27조 (기술료의 사용)

①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업계획서상에 명기된 총괄주관기관 및 해당기관의 참여연구원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재투자는 총괄주관기관장과 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해 개발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총괄주관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연구원 등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2. 후속기종개발 등 항공기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재투자

3.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의 이체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범위와 사용비율은 다음표와 같다.

사용 목적	사용범위
○ 참여연구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20% 이내
○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재투자	30% 이상
○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의 이체	50%

제7장 보 칙

제28조 (비밀유지)

① 각 위원회 위원, 총괄주관기관, 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본 개발사업에 관

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 개발사업 기간중에 발생한 개발성과나 개발결과의 발표는 총괄주관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발표시는 총괄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전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총괄주관기관도 같다.

③ 위 1, 2항을 위반시는 일정의 과태료를 총괄주관기관에 지불하되 그 금액 정도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총괄주관기관이 위반시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④ 위 3항의 과태료 사용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 (보고 의무)

총괄주관기관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발기관은 상공자원부장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규정)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공업발전법, 동법시행령,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중복체시한 항에 대하여는 사업특성상 본 지침을 우선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과의 유대를 위하여 다음 분야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분야 :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기술, 경제 등의 논설
유용한 흥미기사, 체험담, 의견 등 200자 원고지 30장 이내

◎현장체험 : 감상 수필 200자 원고지 20장 이내

◎접수마감 : 매월 말일 도착분을 다음달에 개재

◎보낼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증권감독원빌딩 16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편집실